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000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정)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3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정)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관련

-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안 제2조)

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관련

-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공급 방법을 민영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1, 별표2, 별표3)

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관련

-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별표1, 별표3)

3. 의견제출

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3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23년 2월 9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 : (주택기금과) 044-201-3343, 3345

○ Fax : 044-201-5530